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국금지대상에 내란·외환·반란죄 혐의자를 포함〉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88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2. 제 출 일: 2025. 2. 24.
3. 회 부 일: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등에게 출국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긴급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에 휘말리는 등 사법 행정력의 낭비와 권위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어,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및 조사 회피 행각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과 외환, 반란 등 중차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안정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혐의자 및 그 동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형법」 중 내란죄·외환죄 또는 「군형법」 중 반란죄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	6. 「형법」 제2편제1장과 제2장, 「군형법」 제2편제1장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
<신설>	7.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u>

② ~ ⑤ (생 략)	<u>으로 정하는 사람</u>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출국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의 한 형태이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¹⁾ 따라서, 출국금지(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음.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출국금지 제도는 출국금지 대상(제4조), 출국금지기간 연장(제4조의2),²⁾ 출국금지결정 통지(제4조의4),³⁾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4조의5),⁴⁾ 출국금지 해제(제4조의3)⁵⁾, 긴급출국금지(제4조의6)⁶⁾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1)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한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이 있음.⁷⁾

또한, 범죄혐의로 인한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필요 시 1개월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7)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8)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형법」 중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⁹⁾ 외환죄는 외환을 유치 또는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며,¹⁰⁾ 「군형법」 중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 등에 대한 범죄임.¹¹⁾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끼칠 위해를 고려할 때,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내란죄·외환죄 및 반란죄의 수사를 위해서는 1개월 기간 단위로 출국금지 및 연장이 가능할 것이고,¹²⁾ 동 범죄로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임.¹³⁾¹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9)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10)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하 생략)
- 11)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12) 자세한 조문은 각주 8) 참조
- 13) 자세한 조문은 각주 7) 참조

그럼에도 개정안은 현행법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출국 금지를 도입·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고 보다 신속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조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에 계속

1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결정 통지 예외 대상을 열거하면서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 중 반란의 죄 등을 명시하고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係屬) 중인 사람이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에 출국금지를 규정하는 체계인바,¹⁵⁾ 개정안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을 어느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의 ‘사료’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생각’, ‘판단’을 의미¹⁶⁾하는 동 용어가 출국 금지라는 침익적 처분의 대상자를 표현하는 적절한 법률상 용어인지, 즉 법률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⁷⁾

문 의 처

02)6788-5057

15) 조문 내용은 각주 7) 및 8)을 참조

16) 국립국어원은 사료(思料)되다를 “깊이 생각되어 헤아려지다”로 해석하고, ‘생각’ 혹은 ‘판단’으로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17) “사료” 표현이 규정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